

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1. 입소정원: 62명
2. 입소대상: 장기요양등급 1, 2등급 또는 3, 4, 5등급(시설급여) 판정 받은 자
3. 입소절차: 입소신청(대기자 접수)
 - 장기요양인정서,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시설급여 확인 후, 입소신청
 -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시청에 입소이용의뢰서 신청
 - 엘림실버빌 내방 및 전화로 상담하여 입소신청
4. 입소 시 필요서류
 - 일반대상자
 - 장기요양인정서,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사본
 - 전염성질환이 없음을 증명하는 건강진단서 1부(입소 전 1개월 이내 서류)
 - 처방전 및 의사소견서 1부
 - 주민등록등본 1부
 - 가족관계증명서 1부
 - 주민등록증
 -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추가서류
 - 통장사본 1부
 - 시설주소지로 주소이전
5. 계약기간: 장기요양서비스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에서 체결되며, 장기요양등급갱신과 관련된 추가계약을 포함한다.
6. 계약목적: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대상자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설서비스로 대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다.
7. 월 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: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매년 장기요양위원



회가 결정, 고시하는 『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』를 준용하며 매년 상승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.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

구 분 (시설급여)		본인일부부담금			
		일반대상자	감경대상자		기초생계수급권자
공단·개인 본인부담비율		공단 : 80% 개인 : 20%	공단 : 88% 개인 : 12%	공단 : 92% 개인 : 8%	공단 : 100% 개인 : 0%
촉탁의 진찰비 본인부담비율		공단 : 80% 개인 : 20%	공단 : 88% 개인 : 12%	공단 : 92% 개인 : 8%	공단 : 100% 개인 : 0%
비 급 여	식재료비	1식 = 2,000원 / 1일 = 6,000원			면 제
	간식비(1일2회)	1일 = 1,200원			
	이미용비	자원봉사 이용시 무료 그 외 그 방법에 따라 다름			
	상급침실비	1인실 200,000원 / 2인실 100,000원			

<30일 기준>

등급	수가	본인부담(20%)	비급여	총계
1	90,450원	542,700원	216,000원	758,700원
2	83,910원	503,460원		719,460원
3~5	79,240원	475,440원		691,440원

<30일 기준>

등급	수가	본인부담(12%)	비급여	총계
1	90,450원	325,620원	216,000원	541,620원
2	83,910원	302,076원		518,076원
3~5	79,240원	285,264원		501,264원

<30일 기준>

등급	수가	본인부담(8%)	비급여	총계
1	90,450원	217,080원	216,000원	433,080원
2	83,910원	201,384원		417,384원
3~5	79,240원	190,176원		406,176원

계약의 진료

<1회 진료기준>

본인부담율	초진료(18,410원)	재진료(13,160원)
20%	3,680원	2,630원
12%	2,200원	1,570원
8%	1,470원	1,050원

※비급여 항목: 식재료비, 간식비, 상급침실료

- 식재료비: 1식 2,000원(3식 6,000원)
- 간식비: 1회 600원(2회 1,200원)
- 상급침실료: 1인실 200,000원, 2인실 100,000원

※일반: 본인부담금 20% + 비급여(식재료비, 간식비, 상급침실료 등)

※감경: 본인부담금 12% + 비급여(식재료비, 간식비, 상급침실료 등)

본인부담금 8% + 비급여(식재료비, 간식비, 상급침실료 등)

※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모든 비용은 본인(보호자)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.

※수납방법: 시설명의로 지정계좌에 송금.

8.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

-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①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존중받을 권리
- ② 서비스이용자의 평등하고 성실한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
- ③ 서비스이용자의 케어계획, 생활상의 일상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을 권리
- ④ 서비스이용자가 받게 되는 케어서비스, 프로그램, 시설내외 행사, 교육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행 또는 참가여부를 결정할 권리
- ⑤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서비스이용자의 면회, 외출, 외박, 퇴소, 전원 등에 관한 권리
- ⑥ 서비스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

- ⑦ 입소자의 케어와 관련하여 알려진 사생활과 신체상의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
- ⑧ 청구된 이용료 내역에 대해 알 권리
- ⑨ 서면 또는 구두로 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권리

-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①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 계약 내용을 이행해야 할 의무
- ② 외출 · 외박 시 승인을 얻고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.
- ③ 보호자는 입소계약과 동시에 입소자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설규정을 준수할 의무
- ④ 입소자의 질환 여부에 따라 적용기간 및 심신 안정 기간을 위해 입소 후 방문은 담당자의 지시를 따라야 할 의무
- ⑤ 보호자는 입소자의 입소 후 방명록 기록과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
- ⑥ 보호자는 입소 어르신들에게 무례한 행동으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할 의무
- ⑦ 입소자에게 필요한 물건 및 음식, 약 등을 제공할 때에는 담당자에게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할 의무
- ⑧ 기타 입소자의 일상생활에 있어 불편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담당자와 상의하여 시설에 개선을 요구하여야 하며 단체생활을 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설의 방침에 따라야 할 의무
- ⑨ 비용의 부담은 장기요양등급판정의 급여수가 따른 금액 자부담과 비급여 부담분을 매월 수납해야 할 의무
- ⑩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해 통보하고 동의를 받음.

9. 계약해제: 입소자(보호자)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입소자(보호자)와 시설 이용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.

- 어르신이 사망하였을 때
- 건강검진 결과 법정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
-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
-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
-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